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능정보화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410호, 2024. 3. 26. 공포, 2025. 3. 27. 시행)됨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로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제공,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제공 등을 정하고, 이러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회 위반 시 900만원, 2회 위반 시 1,5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4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16. ~ 2025. 1.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접근성 실태조사
2.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3.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5조(장애인·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장애인·고령자 등이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1.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2.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제공
3.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충족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4.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제공
5.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

②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무인정보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날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2026년 3월 27일 이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날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2027년 3월 27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정보단말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과 관련한 국내외 주요 법·제도 동향

3. 그 밖에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 중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

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다목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	350	350	350
나.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관리·활용한 경우	법 제70조제3항제1호	200	300	400
다.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1항	900	1,500	2,400
라.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경우	법 제70조제3항제2호	200	300	4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장애인 · 고령자 등의 지능 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제34조(장애인 · 고령자 등의 지능 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 · 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유 · 무선 정보통신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유 · 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장애인 ·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웹사이트		1. 접근성 실태조사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2.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 · 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3.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4. 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유 · 무선 정보통신				

신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접근성 실태조사

2.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3.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대상)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이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을 말한다.

제35조(장애인·고령자 등의 무인 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인 정보단말기(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장애인·고령자 등이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1.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2.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제공

3.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충족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4.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제공

5.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

②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무인정보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날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2026년 3월 27일 이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날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2027년 3월 27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 70조제1항 및 제2항</u>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⑥ <u>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무인정보단말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2.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과 관련한 국내외 주요 법·제도 동향</u> <u>3. 그 밖에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⑦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제5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 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연 락 처	(044) 202 - 6155